

KIC ISSUE PAPER
2015. 12. 제 9 호

홍 영 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

I. 배경 / 5

II. 데이트 폭력의 피해 및 가해 실태 / 7

III. 선진 각국의 정책동향 / 13

IV. 정책제언 / 18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쟁점과 대안

■ 배경

-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중 4대악으로 지정된 가정폭력 못지 않게 데이트 폭력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효과적인 예방대책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뮤지컬 여배우 납치 및 살인미수, 헤어진 여자 친구 살해, 결별을 선언한 여자 친구에게 염산을 뿌리는 등 가정 이외에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폭력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범죄에 있어 연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살인범죄의 경우 연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이 1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같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날로 흉폭 해지고 발생건수도 많아지고 있지만, 가정폭력방지특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가정폭력과는 달리 연인 사이의 폭력(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¹⁾임.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²⁾으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1) 현재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법제는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①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② 욕설, 폭언, 멸시 등 언어적 폭력: 「형법」상 모욕죄, ③ 폭행, 상해, 감금 등 신체적 폭력: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④ 스토킹에 의한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⑤ 협박 등 정신적 폭력: 「형법」상 협박죄(국회입법조사처, 2014,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2)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항 41호에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

하나 범칙금이 워낙 적어 범죄억제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대처하고 있음. 또한 영국에서는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매년 2월을 ‘데이트 폭력 근절의 달’로 지정할 정도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심층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즉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의 형사법적 대응정책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정책과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 데이트 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1.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 검토
2.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데이트 폭력피해자보호
4.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5. 폭력에 대한 태도 전환에 대한 교육
6. 폭력의 순환성 방지 및 치료
7. 피해자 지원 강화
8. 미디어를 통한 피해 대처방안 안내
9. 연구지원 강화

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규정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

배경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양상만 다를 뿐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문제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배우자, 연인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다가 1980년대 이후에서야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인권 등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최근 뮤지컬 여배우 납치 및 살인미수, 헤어진 여자 친구 살해, 결별을 선언한 여자 친구에게 염산을 뿌리는 등 가정 이외에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폭력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연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경우가 전체 살인범죄자 1,063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202명을 제외한 861명 중 108명으로 12.6%, 상해는 102,320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9,720명을 제외한 92,600명 중 2,718명으로 2.9%, 폭행은 전체 202,731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91,843명을 제외한 110,888명 중 2,967명으로 2.7%, 손괴는 전체 30,207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4,156명을 제외한 26,051명 중 1,269명으로 4.8%, 성폭력은 전체 25,223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3,749명을 제외한 21,474명 중 686명으로 3.2%를 차지할 정도로 연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폭력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 공식범죄통계에 드러난 사건이외에도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연인관계라는 특성 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임.
-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중 가정폭력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실태조사가 이

루어져 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심지어 4대 악으로 규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수립되어 실태파악이나 대응방안 등이 수립되어 왔으나,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즉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심층적인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살인범죄는 연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으나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에 대해서 많은 연구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왔음.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이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날로 흉폭해지고 발생건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방지특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가정폭력과 달리 연인 사이의 폭력(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결별 통보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나 범칙금이 워낙 적어 범죄억제효과는 미미하며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률안 3건은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는 연인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이른바 파트너폭력을 근절시키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법률도 정비되어 있음.
- 이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데이트 폭력과 관련있는 변인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II

데이트 폭력의 피해 및 가해실태

1. 공식범죄동계³⁾에 나타난 피해실태 및 범죄자 특성

■ 범죄유형별 연인 대상 범죄자

- 살인범죄 : 2014년 살인범죄자 1,063명 중 연인인 경우는 108명으로 10.2%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2005년~2014년) 동안에는 총 10,283명 중 연인인 경우는 1,059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함.
- 살인범죄 중 기수사건 : 2014년 살인범죄로 피해자를 살해한 총 450명 중 연인인 경우는 4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에 살해당한 총 4,308명 중 연인인 경우는 464명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함.
- 성폭력범죄: 2014년 성폭력범죄자 25,223명 중 연인인 경우는 686명으로 2.7%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의 성폭력범죄자 총 166,174명 중 연인인 경우는 4,175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함.
- 강력범죄(폭력)⁴⁾ : 2014년 강력범죄(폭력)자 331,937명 중 연인인 경우는 6,558명으로 2.0%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폭력)자 총 3,495,337명 중 연인인 경우는 73,592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함.
- 폭행범죄 : 2014년 폭행범죄자 202,731명 중 연인인 경우는 2,967명으로 1.5%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폭행범죄자 총 1,713,780명 중 연인인

3) 본 이슈페이퍼에 제시된 공식범죄통계는 2015 「범죄분석」 책자 발간을 위해 재분류된 범죄분류체계에 의해 재분석된 통계이며, 기존의 통계와 달리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와 법인은 제외하고 분석되어 기존에 발간된 「범죄분석」상의 통계와 다소 차이가 남. 또한 통계원표에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적인 피해자 한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통계만으로 연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수를 한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며, 수보다는 비율을 주로 고려해야 될 것임

4)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이 포함됨

경우는 26,602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함.

- 폭행치사 : 2014년 폭행치사범죄자 117명 중 연인인 경우는 6명으로 5.1%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폭행치사범죄자 총 1,146명 중 연인인 경우는 34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함.
- 상해범죄 : 2014년 상해범죄자 102,320명 중 연인인 경우는 2,718명으로 2.7%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상해범죄자 총 1,509,280명 중 연인인 경우는 39,690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함.
- 상해치사 : 2014년 상해치사범죄자 68명 중 연인인 경우는 4명으로 5.9%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상해치사범죄자 총 1,055명 중 연인인 경우는 65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함.

■ 연인 대상 범죄자 특성 : 전과

- 살인범죄자 : 2014년 연인 살인범죄자 108명 중 전과자는 79.6%, 지난 10년간 연인 살인범죄자 중 전과자는 74.4%.
- 성폭력범죄자 : 2014년 연인 성폭력범죄자 686명 중 전과자는 68.9%, 지난 10년간 연인 살인범죄자 중 전과자는 71.5%.
- 폭행·상해범죄자 : 2014년 연인 폭행·상해범죄자 5,685명 중 전과자는 76.8%, 지난 10년간 연인 살인범죄자 중 전과자는 76.9%.

2.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 및 가해실태

■ 여성과 남성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 및 가해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 여성의 전반적인 폭력 피해 경험 실태

- 조사대상자 중 상대 남자로부터의 행동통제경험을 당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6.0%로 많은 응답자들이 경험을 보고함. 심리적·정서적 폭력피해는 35.2%가 경험하였으며, 신체적 폭력피해는 19.4%, 성추행피해는 35.5%,

성폭력피해는 20.3%, 상해피해는 6.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 유형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1,605명으로 80.3%가 피해경험이 있었고, 통제행동을 제외하면 1,070명(53.5%)이 적어도 하나의 유형에 대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음.

-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 상대방의 전과 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8.8%로 나타나 찬성 입장이 전체의 86.8%에 달함. 이에 비해 ‘인권문제가 있으니 반대’한다는 의견은 9.8%,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5%에 불과하여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음.

■ 데이트 폭력 가해 실태

- 상대의 행동을 통제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1.7%로 가장 높음. 심리적·정서적 폭력은 36.6%, 신체적 폭력 22.4%, 성추행 37.9%, 성폭력 17.5%, 상해 8.7%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됨. 한 유형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93명으로 79.7%가 경험이 있었고, 통제행동을 제외하면 1,140명(57.0%)이 적어도 하나의 유형에 대한 폭력 경험이 있음.
- 데이트 폭력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한 남자 응답자는 62.1%로 나타나 여자들(80.4%)보다 들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낮음.
-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상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우가 36.1%로 이 역시 여성(43.6%)에 비해 목격하거나 들은 비율도 상당히 낮음.
-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 본 결과, ‘둘 사이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2%로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2.5%였음. 한편 ‘인권문제가 있으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27.7%,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9.7%로 나타나 찬성 입장이 전체의 62.7%였음. 이는 찬성비율이 86.8%에 달한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임. 즉 대부분 피해자의 입장인 여성의 경우에 찬성비율이 훨씬 높음.

■ 남녀간 성에 대한 인식 차이

- 사랑에 대한 인식 : 남녀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이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음. 또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쑥 집으로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낭만적’이라는 인식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음. 다만 ‘전화를 먼저하고 자주하는 것으로 사랑을 평가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자의 동의 정도가 남자보다 더 높음.
- 또한 남녀간 서로 상이한 인식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항목인 ‘연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항과 ‘사랑하지만 성관계는 싫다는 말의 본 뜻은 연애관계를 끝내자는 말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음. 즉 남자는 여자보다 성관계를 교제와 관련지으려는 인식이 많다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됨.
- 또한, 남녀간 인식 차이가 심한 내용들 중의 하나인 ‘연인들이 호텔이나 모텔에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와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음.

■ 연인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

-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친구에게 뺨을 맞을 만한 여자도 있다’, ‘바람을 피우면 남자친구에게 뺨을 맞아야만 한다’, ‘맞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남자는 여자친구를 잘 때리지 않는다’,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 ‘여자친구의 뺨을 때려야 할 정도로 질투가 심해질 수도 있다’, ‘여자친구를 때릴 정도로 남자의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다’와 같이 남자의 폭력이 마치 여자의 잘못 때문이라거나 사랑 때문이라고 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의 동의 정도가 더 높음.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태도에서 남자의 동의정도가 더 높음.
- 또한 ‘때때로 남자들은 여자 친구에게 주먹질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거나 ‘때때로 남자들은 여자 친구로 인해 화가 나면 때리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와 같이 남자의 폭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태도 역시 남자의 동의 정도가 여자보다 더 높음.

■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특성 비교

-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자존감은 더 낮았고,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및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더 높았음.
- 또한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성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 정당화에 대해서 모두 높았음.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부모 상호간의 폭력이 더 많았으며, 본인도 폭력(학대) 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 남성들이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임.

-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성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 정당화에 대해서 모두 높았음. 즉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폭력에 대해 긍정적이고 허용적이며 폭력에 대해 정당화경향성이 더 높음.

III

선진 각국의 정책동향⁵⁾

1. 영국

- 영국 내무성이 최근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들은 가정폭력 개념의 재정립,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 클레어법(Clare's Law)의 실시.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정의 :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구성원이 16세 이상의 사람을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통제하거나(controlling), 강요하거나(coercive), 위협하거나(threatening), 폭력을 가하거나(violence), 학대하는(abuse) 행위, 즉 심리적, 신체적, 성적, 재정적 및 정서적 학대를 뜻함.

■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 목적

- 가정폭력전과 공개의 주된 목표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는 상대의 새로운 파트너가 상대방의 과거 전과를 인지한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 및 어떤 관계를 맺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개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 위험도의 측정은 전과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의 단계를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실무조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함.

■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 특징

5) 이 부분은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의 내용 중 주승희 교수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임.

- ① 새로운 파트너에게 가정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의 폭력전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A가 B와 계속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② 과거 관계 공무원이 가해자의 과거 폭력전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그 공개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방식을 능동적으로 전환함.
 - ③ “문의할 권리(right to ask)”에 기초하여, 가정폭력피해의 위험에 놓인 피해자는 사전적으로 필요 정보를 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련 중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음.
 - ④ “알 권리(right to know)”에 기초하여, 보호책임이 있는 기관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B가 그 파트너 A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갖게 될 경우, 그 보호기관은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의 합법성과 필요성, 균형성을 심사하여야 함.
 - ⑤ 주변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킴
다만,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위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정보공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판례법과 인권보호법(The Human Rights Act 1998),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 범죄자갱생법(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공개제도는 2012년 1년간의 시범실시 이후 2014년 3월부터 영국 전역과 웨일즈 지역에 확대되어 실시.

2. 미국

-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영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개념에 포함시키는 주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고, 무엇보다

다도 연방법으로서 여러 차례 재승인 받은 여성폭력방지법의 내용 및 운용이 매우 주목할 만함.

- 연방기관인 여성폭력방지사무소의 설립이나 여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총기소지 제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협력 강화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폭력방지법 기금을 통해 매해 50만 명의 법집행기관 직원과 검사, 판사, 피해자변호인 등을 훈련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그릇된 인식을 제거하고, 여성폭력전담특수부서가 설치된 검찰과 경찰, 법원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기소율과 유죄율, 양형을 이끌어냈음.
- 피해자지원차원 : 핫라인을 설치하고, 거주지지원기금을 마련하여 거주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 기금을 새롭게 형성하여 의료인들이 가정폭력을 심사하고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증거수집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호대상을 자국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과 노인,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음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백악관의 2014년 조사결과 여성폭력방지법의 시행 이후 미국 내 가정폭력발생률이 감소하였고, 성폭력에 의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임. 더불어 2013년 여성폭력방지법이 캠퍼스보안공개법(Jeanne Clery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학들이 캠퍼스 내 성폭력의 예방과 각성, 적절하고 공정한 조사 및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정책으로 삼을 것과 피해자들의 권리와 원조에 관한 정보들을 연간 보고서에 실을 것을 명함으로써 캠퍼스 내 성폭력의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도모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큼.

3. 독일

- 독일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02년 폭력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가해자는 떠나야 하고, 피해자가 집에 머문다”는 원칙 하에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거처양도명령제도(Wohnungs berlassung)의 도입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사적영역에서 행해져도 결코 사적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⁶⁾ 폭력보호법은 주로 배우자나 동거남 등 파트너의 폭행으로부터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동법상의 여러 보호조치에 대한 신청권자가 배우자나 동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누구나 가능(제1조)하므로.⁷⁾ 결혼이나 동거가 아닌 단기간의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역시 동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함. 특히 동법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 이른바 스토킹(Stalking)의 피해자 역시 동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았음을 볼 때(제1조 제1항 제1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역시 동법의 보호대상이 됨은 분명함.

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2013년 5월 [친밀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 WHO의 치료와 정책 지침서](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6) Bundesministerium f 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a. a. O. S. 3f.

7) 다만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신청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제1조).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 WHO clinical and policy guidelines) 발간.

- 친밀한 관계⁸⁾에 있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하 ‘파트너폭력’) 및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서비스제공자들이 폭행피해여성을 식별할 최선의 방법을 증거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최초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다른 관련 팀 구성원을 위한 배우자폭행 및 성폭행 분야의 훈련 과정 안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
- 이 지침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파트너폭력 및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의료행위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관련 연구를 검토한 후 실효성이 입증된 사항들을 권고함으로써 매우 신뢰할 만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별 국가가 파트너폭력과 성폭행의 식별과 피해자를 위한 의료행위, 관련 훈련, 파트너폭력의 강제적 보고 등에 관하여 이를 훌륭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어, 피해자의 치료와 (증거수집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 재범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8) 본 지침서에서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란 남편, 동거남, 남자친구, 전남편, 전동거인, 전남자친구, 전연인을 뜻함.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 WHO clinical and policy guidelines*.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85240/1/9789241548595_eng.pdf

IV

정책제언

1.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연인을 살해한 범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살인범죄자 중 전과자가 74.4%에 이를 정도로 전과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성폭력범죄자의 71.5%, 폭행 또는 상해범죄자의 76.8%가 전과자로서 전과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 또한 청구전조사서에 대한 기록 조사에서도 연인 살인범죄자의 81.0%, 성폭력범죄자의 77.8%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중 여성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8.3%로 나타나 찬성입장이 전체의 86.8%에 달했음. 이에 비해 ‘인권문제가 있으니 반대’한다는 의견은 9.8%,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5%에 불과하여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음.
-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들의 찬성입장은 다소 낮은 편이긴 하나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22.5%,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0.2%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62.7%로 나왔음. 즉 남성들 역시 찬성한다는 입장이 많았음.
- 영국에서는 최근 가정폭력의 개념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배우자나 동거남에 의한 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연인에 의한 폭행피해를 가정폭

력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특히 클레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마련된 가정폭력전과공개법의 실시로 인해 연쇄폭력법에 의한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전과의 공개는 (전과)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 논란은 많지 않음. 가정폭력전과 공개관련 지침을 보면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가 보통법, 인권보호법, 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합법성과 필요성, 균형성에 기초하여 ‘위해위험도 측정’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공개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의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음.
- 우리도 영국에서와 같이 가정폭력전과 공개관련 지침서에 대한 철저한 준수 하에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 현재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법제는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경범죄 처벌법」 등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범죄의 성격상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양형판단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오히려 감경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음(정은영, 2015⁹⁾).
- 이처럼 특성 상 처벌이 쉽지 않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우선 수사기관이

나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연인들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연인이라는 관계로 인해 오히려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거의 10% 정도는 결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응답자의 거의 10% 정도는 스토킹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는 현재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나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2015년 2월 13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13972)’, ‘스토킹 방지법안(2013년 6월 19일, 김제남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05532)’,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012년 8월 27일, 이낙연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01321)’ 등 3개의 법안¹⁰⁾이 발의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 불안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점, 위법성 또는 침해의 정도가 점차 심해진다는 점, 그리고 범죄신고를 이유로 보복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 범행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국회입법조사처, 2015¹¹⁾) 등 임. 따라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임.

9) 정은영(2015).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포럼] 데이트/관계/폭력:데이트 폭력을 말한다, 세 번째. 한국여성안전회, 서울.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5년 12월 30일 검색(<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11) 국회입법조사처 (2015).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

-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데이트 폭력범죄와 유사한 범죄로 가정폭력을 들 수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닐 뿐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범죄의 특성이나 양상도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사실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교제 중인 연인이나 전애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전배우자도 포함할 정도로 범죄나 피해의 양상 및 범죄피해 후의 대처 등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법상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류병관, 2014¹²⁾).
- 영국, 미국, 독일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포함시키는 주가 늘어가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연방법인 ‘여성폭력방지법’에는 포함되어 있음.

4.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상황에 대해서 이를 연인들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연인들 사이의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데이트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하거나 가해자를 쉽게 처

12) 류병관 (2014). 데이트 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법학연구**, 22(3), 91-114.

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음.

-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관계의 친밀도, 정서적 의존성으로 인해 피해를 외부에 호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폭력 상황이 두 당사자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음. 설문조사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거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음.
- 폭력의 피해자가 선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의 피해상황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리게 되는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게시물 삭제 등의 가처분 신청을 당할 수도 있음.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에 관하여 허위 적시는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음. 물론 진실한 적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데이트 폭력 문제를 개인간의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로 치부하는 현재의 통념 하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정은영, 2015).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캠페인들을 벌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매년 2월을 ‘데이트 폭력 근절의 달’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현 정부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노력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임.

5. 폭력에 대한 태도 전환교육 실시

- 설문조사결과, 남녀간에 성의식이나 성관계 대한 인식이 여전히 차이가 컸으며 남성의 폭력에 대한 태도나 허용도가 여전히 여성보다 높았음. 예를 들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교제중인 연인에게 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성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 정당화에 대한 동의정도가 모두 높았음. 즉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가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폭력에 대해 긍정적이고 허용적이며 폭력에 대한 정당화 경향성이 더 높았음.
- 또한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상황에 따라 또는 조건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친구에게 뺨을 맞을 만한 여자도 있다’, ‘바람을 피우면 남자친구에게 뺨을 맞아야만 한다’, ‘맞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남자는 여자친구를 잘 때리지 않는다’,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 ‘내(여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한다면, 나(여자)의 잘못이다’, ‘여자친구의 뺨을 때려야 할 정도로 질투가 심해질 수도 있다’, ‘여자친구를 때릴 정도로 남자의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다’와 같이 남자의 폭력이 마치 여자의 잘못 때문이라거나 사랑 때문이라고 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의 동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 설문조사 결과, 남녀간에는 폭력에 대한 대응에서도 차이가 컸음. 예를 들어, ‘연인관계에서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문항과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남자의 동의정도가 여자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높았음. 여자의 입장에서는 싸우고 난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의 성관계가 오히려 폭력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연인 사이에서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참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역시 남녀간의 태도 차이가 유의미하였음. 이런 결과는 결국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남녀의 차이 등 남녀 상호간의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행해져야 함을 시사함.
- 전생애에 걸쳐 각 연령대별 예방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아동기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교육 및 학대받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프로그램, 처음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청소년기 학생들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예방프로그램, 성인지 교육 및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기술프로그램,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불평등 인식 및 해소 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6. 폭력의 순환성 방지 및 치료

- 설문조사 결과, 성장기에 부모들의 폭력을 경험하거나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에 폭력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노력과 더불어 가정폭력 또는 학대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기 상담이 요구된다 하겠음. 즉 학교에서부터 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 및 부부간의 폭력이 있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개입하여 적절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교폭력의 가해에도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더

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해서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할 것임.

-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이 있는 경우에 폭력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들 역시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불안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폭력의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지원요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7. 피해자 지원을 강화

-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WHO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에 의한 폭행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지침서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 지침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파트너폭력 및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의료행위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관련 연구를 검토한 후 실효성이 입증된 사항들을 권고함으로써 매우 신뢰할만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별 국가가 파트너폭력과 성폭행의 식별과 피해자를 위한 의료행위, 관련 훈련, 파트너폭력의 강제적 보고 등에 관하여 이를 훌륭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어, 피해자의 치료와 (증거수집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 재범예방에 도움을 줄 것임. 특히 여성중심케어(women-centered care)의 관점을 유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상의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류병관, 2014).

- 또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대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즉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상담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상담 및 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려야 할 것임.

8. 미디어를 통한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

-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매스컴으로도 데이트 폭력의 실태 및 심각성에 대한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스컴의 보도 패턴을 보면, 실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이후 공식범죄통계를 제시하고, 현행 처벌의 양형 등을 보도할 뿐임. 문제는 이토록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태를 점검, 그리고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만을 전할 뿐 교제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폭력으로 볼 것인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피해를 당하면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점임.
-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을 시에는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한 피해를 외부에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며, 폭력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음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기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교제 시에 폭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폭력의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상담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등

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인지 사랑인지 헷갈리면 폭력”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SNS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알리게 되는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게시물 삭제 등의 가처분 신청을 당할 수도 있는 등 선부른 대응이나 부적절한 호소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도 필요함.

9.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 지원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중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법과 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며 연구도 다소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가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 특히 성인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폭력발생의 심리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폭력 예방정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는 하나 이보다는 교제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성인만이 아닌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연령대별 폭력 및 피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교육이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임.
- 또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론화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자료를 지원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이나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특성이나 범죄자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KIC ISSUE PAPER 2015. 12. 제9호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

발행인 | 김진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 575-5282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처 | 삼신인쇄
(02) 2285-6478
